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22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1.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개요	8
2. 석유화학단지 현황	9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 비용추계서 요약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3.
3. 회부연월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 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목적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추가하고, ② 동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¹⁾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으로(안 제18조),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u>안정</u>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 ----- <u>안정 및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u> -----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 ⑨ (생략) <신설>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구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법²⁾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 ⑧ (생략)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속되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³⁾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각종 세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⁴⁾은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임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누출 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목적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 14. (생략)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6. (생략)

③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개요는 참고자료 1 참조

과 발전”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도입된 본래의 취지 및 현행법의 입법목적⁵⁾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2차례의 석유파동⁶⁾을 계기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징수된 석유사업기금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1994년 말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금들이 에특회계로 이관·통합된 이후 에특회계에 산입되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⁷⁾을 위한 각종 세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음,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부(3% 이내)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의 기준⁸⁾(석유화학업종⁹⁾을 운영하는 업체의 입주비율이 50% 초과)을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1차 석유파동(1973~1974년) 및 2차 석유파동(1978~1980년)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단지”는 ① 입주율과 가동률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② 석유화학업주

충족하는 총 46개의 석유화학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¹⁰⁾, 2024년 6월 기준 전체 입주업체(619개) 중 석유화학업종(390개)의 비율이 63%이고, 이 중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는 정유업체(1개) 포함 5개 업체¹¹⁾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46개 단지 입주업체 및 부과금 납부업체 현황(2024년 6월 기준)]

구분		계	석유화학업종		기타 업종
			정유업체	석유화학업체	
입주업체	업체 수(개)	619	1	389	229
	비율(%)	100.0	0.2	62.8	37.0
부과금 납부업체(개)		5	1	4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입주율과 가동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전체 입주기업체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석유화학입주업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나. 전체 입주기업체의 연간 생산액 중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

업체의 비율 또는 연간생산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하나, 입주율과 가동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업종별 생산액 통계자료는 미비한 상태여서 적용하기 어려움.

- 9) 석유화학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의미함(*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코드번호임)
- 10) 석유화학단지(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41개) 내 입주업체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 11) 석유화학업체 중 하나의 업체가 3개의 산단에 각각 입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개 업체임.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석유화학업체 및 타 업종(기계·전기전자·운송장비·철강 등 업종)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업체(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 판매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의 예외적 적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원인제공과 거리가 먼 정유사·수출입업자 등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대부분(약 90%)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②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3%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총 1,560억 7,400만원, 연평균 312억 1,500만원으로 추정됨.

문 의 처
02)6788-5457

※ 참고자료

1.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개요

□ (제도개요) '79년부터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부과금 제도를 운영

○ (징수대상)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징수품목) ^{수입} 원유·석유제품(16원/L), 천연가스(발전용 : 3,800원/톤, 그 외* : 24,242원/톤), ^{판매} 고급휘발유(36원/L), 부탄(62,283원/톤)

* 발전용 외 천연가스는 '25.6.30일까지 16,730원/톤 적용

□ (운영현황) '23년 3.58조원 징수, 2.66조원 환급* ⇒ 1.09조원 순징수

* 수출, 공업원료용, 비축용, 전자상거래용 등 (석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최근 3년간 석유부과금 징수 및 환급 금액(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부 과 금	총 징 수	35,301	36,781	35,786
	* L N G	6,172	5,809	5,543
	환 급	22,319	21,689	26,602
	* L N G	256	265	268
	순 징 수	12,982	15,092	9,184
	* L N G	5,889	5,544	5,275
관 매 부 과 금		1,867	1,514	1,690
순징수 계		14,849	16,606	10,874

<최근 3년간 용도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석유제품	수출	12,791	12,623	15,707
	공업원료용	7,827	7,648	7,645
	전자상거래	121	99	107
	다변화	1,284	1,055	2,834
	기타	40	1	41
소 계(a)		22,063	21,426	26,334
L N G	열병합용	256	258	266
	냉·난방용	-	-	-
	선박연료용	-	7	2
소 계(b)		256	265	268
총 환급액(a+b)		22,319	21,689	26,6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석유화학단지 현황

(단위: 개, %)

산업단지	시도	시군	단지명	입주업체(A)	석유화학(B)	B/A
국가 (5개)	충북	보은군	보은	1	1	100.0%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73	45	61.6%
	충남	서산시	대죽자원비축	1	1	100.0%
	전남	여수시	삼일자원비축	2	2	100.0%
	경남	거제시	지세포자원비축	1	1	100.0%
일반 (41개)	부산	기장군	기룡2	2	1	50.0%
	대구	달성군	대성하이스코	2	1	50.0%
	세종	세종	전의2	32	20	62.5%
	세종	세종	부강	11	6	54.5%
	경기	김포시	통진(팬택)	4	3	75.0%
	경기	안성시	덕산	10	7	70.0%
	경기	안성시	방초	9	6	66.7%
	경기	안성시	안성제3	50	28	56.0%
	경기	안성시	원곡	6	3	50.0%
	경기	화성시	장안첨단(2)(외국인)	8	4	50.0%
	경기	화성시	팔탄(한미약품)	1	1	100.0%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	52	45	86.5%
	경기	안성시	지문	1	1	100.0%
	경기	안성시	개정지방	12	6	50.0%
	경기	용인시	농서	1	1	100.0%
	경기	화성시	영진바이오	1	1	100.0%
	경기	화성시	동진	1	1	100.0%
	강원	춘천시	남면	1	1	100.0%
	강원	홍천군	홍천북방	2	1	50.0%
	충북	충주시	중원	24	14	58.3%
	충북	음성군	대풍	11	7	63.6%
	충북	진천군	이월	6	6	100.0%
	충북	음성군	생극	41	21	51.2%
	충북	진천군	죽현	2	1	50.0%
	충북	음성군	오선	20	12	60.0%
	충북	진천군	신척	99	54	54.5%
	충남	공주시	탄천	34	25	73.5%
	충남	서산시	대산	4	4	100.0%
	충남	서산시	대죽	12	8	66.7%
	충남	서산시	대산컴플렉스	3	3	100.0%
	충남	서산시	현대대죽	3	2	66.7%
	충남	예산군	예당	41	22	53.7%
	충남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6	3	50.0%
	충남	공주시	남공주	22	14	63.6%
	충남	금산군	금산	1	1	100.0%
	경북	영주시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3	3	100.0%
	경남	창녕군	넥센	1	1	100.0%
	경남	진주시	지수	2	2	100.0%
계				619	390	63.0%

주: '24.6월 기준 입주업체 중 석유화학업체(표준산업분류 기준) 기업수 비중이 50%이상인 산업단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22호) 비용추계서 요약¹²⁾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제10항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60억 7,400만원(연평균 312억 1,5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두 법안과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 (안 제18조제10항 신설)	35,508	33,361	31,215	29,068	26,922	156,074	31,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보다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서 원문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H4H0G7H1F0N1O1M1N8L0L7K5G5G7